

# 인사위원회 규정

2022.12.15.



## 제 1 조 (목적)

이 규정은 SK 가스 주식회사(이하 "회사"라 한다)의 인사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고 한다)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 제 2 조 (적용 범위)

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,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## 제 3 조 (권한)

위원회는 대표이사의 평가 및 유임 여부, 사내이사의 보수액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며, 주요 임원의 평가 및 보수액 책정 결과에 대해 보고를 받는다.

## 제 4 조 (구성)

- ① 위원회 위원(이하 "위원"이라 한다)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.
- ② 위원의 선임 및 해임은 이사회 결의로 한다.
- ③ 위원의 임기는 이사의 재임기간으로 한다. 다만, 이사회 결의로 위원의 임기를 조정할 수 있다.
- ④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, 위원의 과반수 이상은 사외이사로 한다.

## 제 5 조 (위원장)

-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외이사로 하며 위원회에서 선임한다.
-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 시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한다.
- ③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## 제 6 조 (소집권자)

-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각 위원이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

- ②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### **제 7 조 (소집절차)**

- ① 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회일을 정하여 그 7 일전에 각 위원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.
- ② 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를 있는 때에는 제 1 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.

### **제 8 조 (결의방법 등)**

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.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동영상(음성 포함) 또는 음성을 동시에 송·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으로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### **제 9 조 (검토사항)**

-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사전 검토하여 검토 결과 및 의견을 이사회에 보고한다.
  1. 대표이사에 대한 평가 및 그에 따른 유임 여부
  2. 대표이사 해임 및/또는 선임 제안
  3. 대표이사 후보 추천
  4. 개별 사내이사의 보수액에 대한 적정성
- ② 이사회는 위원회의 검토 결과 및 의견에 구속되지 않는다.

### **제 10 조 (보고사항)**

다음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는 보고를 받는다.

1. 주요 임원의 평가 및 개별 보수액 책정 결과
2. 기타 임원의 인사 관련하여 회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

### **제 11 조 (대표이사에 대한 평가 등)**

- ① 위원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0 일 전까지 임기 중 대표이사의 해당 회계연도에 대한 업무평가를 진행한다.
- ② 위원회는 제 1 항의 업무평가 결과를 토대로 해당 대표이사의 유임 여부를 검토한다.
- ③ 위원회는 제 1 항에 따른 업무평가의 결과, 제 2 항에 따른 유임 여부 검토의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회사에 통보한다.
- ④ 위원회는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평가 진행 및 유임 여부 검토 과정에서 회사에 자료제출 및 의견제시를 요청하고, 회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### **제 12 조 (대표이사 해임 또는 선임 제안 등)**

- ① 위원회가 제 11 조 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라 업무평가를 진행하여 해당 대표이사에 대해 유임이 불가하다고 판단한 경우, 위원회는 당해 회계연도 종료일까지 제 11 조 제 3 항부터 제 4 항까지의 절차를 진행하고, 해당 대표이사의 해임 및/또는 신규 대표이사의 선임을 이사회에 제안한다.
- ② 전항의 경우, 위원장은 이사회 의장에게 해당 대표이사의 해임 및/또는 신규 대표이사의 선임을 진행하기 위한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여야 한다. 이사회 의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장의 이사회 소집을 거절할 경우에는 위원장이 직접 이사회를 소집한다.

### **제 13 조 (대표이사 후보군 관리 및 후보 추천 등)**

- ① 회사는 대표이사 후보군을 상시 관리하여 최신으로 유지하여야 한다.
- ② 회사는 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상시 관리·유지하는 대표이사 후보군 중에서 적절한 대표이사 후보를 선정하여 그 목록(이하 "대표이사 후보 목록")을 제공하여야 한다.

- ③ 위원회는 대표이사 후보 추천이 필요할 경우 회사에 요청하여 대표이사 후보 목록을 제공받아야 한다.
- ④ 위원회는 제 3 항에 따라 제공받은 대표이사 후보 목록의 후보를 검토한 후 이사회에 최종 대표이사 후보를 추천한다. 이 때, 위원회는 회사가 제공한 대표이사 후보 목록 외에 새로운 대표이사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.
- ⑤ 위원회는 제 3 항 및 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이사 후보 추천 과정에서 회사에 자료제출 및 의견제시를 요청하고, 회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#### **제 14 조 (사내이사 보수액 검토)**

- ① 위원회는 개별 사내이사의 보수액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통해 개별 사내이사의 연도별 보수액을 검토하고,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.
- ② 위원회는 제 1 항의 보수액 검토 과정에서 회사에 자료제출 및 의견제시를 요청하고, 회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#### **제 15 조 (주요 임원의 평가 및 보수액 책정 결과 보고)**

- ① 사무국은 주요 임원의 평가 및 개별 보수액 책정 결과에 대하여 매년 1 회 이상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② 이 때, 주요 임원이라 함은 회사 성과 창출/기업가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임원을 말하며, 구체적인 범위(대상자)는 회사가 판단하여 결정한다.

#### **제 16 조 (관계인의 의견청취 등)**

-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임·직원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- ② 위원은 필요한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.

#### **제 17 조 (의사록)**

-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.

-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

**제 18 조 (사무국)**

위원회의 사무는 기업문화실이 담당하며 이사회사무국이 이를 지원한다.

**제 19 조 (규정의 개폐)**

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.

**부칙(2021.06.28.)**

제 1 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1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(2022.12.15.)**

제 1 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2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.